

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	보 도 자 료				 금융감독원
	보도	2017. 8. 30(수) 14:00부터	배포	2017. 8. 29(화)	

책임자	동향분석실 전용식 실장(3775-9035)	작성자	김규동 연구위원(3775-9049) 오승준 선임조사역(3145-8225)	
	보험감리실 조정석 팀장(3145-8230)	홍보담당	변철성 수석역(3775-9115)	총 6매

보험연구원-민병두 국회의원실-금융감독원, 「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활성화」 정책토론회 개최

- 보험연구원(원장 한기정), 민병두 국회의원실, 금융감독원(원장 진웅섭)이 공동 주최하는 『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활성화』 정책토론회가 8월 30일(수)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됨
 - 이번 세미나는 소방관 등 고위험직종 종사자들이 사회에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높은 보험료와 가입 거절 등으로 인해 보험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, 이들의 보험가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음
 -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제1주제 『고위험직종 계약인수 현황 및 소방공무원 보험가입 활성화 방안』 발표를 통해 보험회사의 고위험직종 종사자에 대한 계약인수 현황 및 인수 기준에 대해 검토하고, 고위험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가 지원하는 단체보험 확대 및 정책성 보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
 - 조정석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 보험상품감리1팀장은 제2주제 『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』 발표를 통해 보험회사의 인수 현황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독 정책적 측면에서 위험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음
-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“보험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위험도에 맞는 보험료 산출과 계약인수 심사가 필요”하지만, 공익을 위해서 위험직종을 수행하는 분들이 보험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언급하면서, 고위험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 활성화 방안이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수립되기를 바란다고 하였음

〈 제1주제 :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현황 및 소방공무원 보험가입 활성화 방안 〉
보험연구원 김규동 연구위원

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인수 기준 및 고위험직종 계약인수 현황

-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위험도에 따라 ①보험료 차등이나 ②보장범위 및 가입금액을 제한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 ③보험가입을 거절하기도 함
 - 보험료 차등은 보험료에 위험도를 반영하는 것이며, 위험도에 맞는 보험료 적용이 어렵거나 위험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불확실성과 손실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보장범위 및 가입금액을 제한함
 - 이러한 조치로도 리스크 관리가 힘들다고 판단할 경우, 보험회사는 가입을 거절함으로써 리스크를 회피하게 됨
 - 손해를 관리를 통한 보험계약자 보호와 보험상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계약인수 심사가 필요한데, 심사 기준은 보험회사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, 심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경우 보험시장 실패의 가능성이 있음
- 보험회사는 직업을 대분류(11종), 중분류(405종), 소분류(996종)로 나누고 있으며, 직업의 위험도에 따라 A(저위험), B와 C(중위험) 및 D와 E(고위험)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음
 - 가입거절 직업은 보험회사 및 보험종류별로 상이하며, 사망보험에 비해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가입 거절되는 직업 및 보험회사가 더 많은데, 이는 보험종류별로 심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임
 - 택배원 및 배달원의 경우 이륜차를 운전하지 않는 택배원 및 배달원에 비해 이륜차를 운전하는 택배원 및 배달원을 가입 거절하는 보험회사가 더 많은데, 보험회사는 특정 직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보다는 실제 직무 수행중 수반되는 위험도를 반영하여 인수 심사를 하고 있다고 보임
 - 영국, 독일, 미국, 일본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직업의 위험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보험료를 차등하거나 보장금액 제한 및 가입거절을 하기도 하는데, 보험료 및 계약인수 여부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함

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

- 보험 원리로 고위험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 거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경우,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많음
 - 통계 집적의 한계로 인해 보험회사별로 직업별 위험도 평가가 어렵거나 상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, **직업별 손해를 통계를 모든 회사가 주기적으로 공유할 경우 회사 통계 부족으로 인해 인수 거절했던 직업에 대해 인수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음**
 - 그러나, 위험도에 적절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**보험요율을 지나치게 세분화**하거나, 계약 인수를 위해 직무 수행중 손해는 보장하지 않는 식으로 **일부 담보를 제외**하거나 **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**할 경우, 요율 세분화에 따른 통계적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**보험료 인상 및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민원이 증가**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
 - 사회 구성원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보험가입 거절을 금지할 수도 있으나, 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
 - 손해율이 높은 고위험직종의 계약 인수가 시장의 실패를 가져올 만큼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, 보험료가 위험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평균 보험료로 계약을 인수(즉, 보험가입 거절 금지)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음
 - 그러나, 의무보험이 아닌 임의보험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
 - **개인보험**은 정부나 기업(고용주)이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장하여 **3층보장론***을 완성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, 사회 또는 기업에서 수행하는 **직무(직업)의 위험으로 인해 개인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**
 - 이러한 경우에 **1차적으로 고용주가 책임을 지는 방향**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
 - 즉, 고위험직종 보험료는 **직무 위험으로 인해 증가한 보험료** 부분이 있으므로, **이를 고용주가 부담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**
 - 따라서, 정부나 기업의 역할을 강화하여 **단체보험 가입을 확대**하거나 **정책성 보험 도입**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
- * 국가가 국민생활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사회 보장, 기업이 종업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기업 보장, 개인이 만족스러운 생활을 위해 준비하는 개인보장의 3단계 보장을 통해 보장이 완성된다는 이론

- 고위험직종 공무원에 대한 보험가입 지원은 1차적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책성 보험 도입을 검토하고, 이 제도가 잘 정착되면 경찰관, 군인, 환경미화원 등 고위험직종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
 - 고위험직종 공무원에 대한 보험가입 지원은 3층보장론 측면에서 개인보장을 완성하기 위해 정부(고용주)가 피고용인을 지원하는 정책임
 - 실제로 소방공무원의 개인보험 가입시 애로사항으로는 높은 보험료, 가입거절, 보장범위 및 가입금액 제한 순으로 조사 되었으며,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 및 소방관 전용보험 신설 등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음

〈 제2주제 : 고위험직종 보험가입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 〉

금융감독원 조정석 팀장

보험회사의 인수 현황 및 문제점

- 보험회사는 보험가입 희망자의 **직업 위험(risk)**을 고려하여 **직업별로 차등화된 인수기준을 설정·운영**하고 있음
 -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직무 특성상 **보험사고** 또는 **보험사기 발생률이 높은 직종 종사자***의 **보험가입을 제한****하고 있음
 - * 고위험직종 예시: 스턴트맨, 곡예사, 차력사, 카레이서, 채석원, 경정선수 등
 - ** 직무에 따라 사고위험이 크게 차별되는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사망보험, 질병보험 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엄격한 가입제한 기준이 적용됨
 - 또한, “고위험직종”을 인수할 경우 **안정적인 위험관리가 어렵고**, 이는 결국 **손해율 상승**으로 이어져 **일반 계약자가 높은 보험료를 납입**해야 하는 **부작용을 초래**하기 때문에 가입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임
- 다만, 그 동안 보험회사의 인수 기준과 이를 적용하는 실무 관행은 **고위험 직종 종사자들의 보험가입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문제점**이 있었음
 - 일부 보험회사는 직무와 손해율의 인과관계 등 **합리적인 사유 없이 단순히 “특정 직업의 위험이 높을 것”**이라는 추정으로 보험가입을 제한하거나,
 - 가입 희망자의 구체적인 직무 행위가 아닌, **가입 희망자의 직업(소속)을 기준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관행** 등으로 인해, 그 동안 **고위험직종 종사자들이 민간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상황**이 발생해 왔음
 - * 이외에도, 일부 보험회사는 위험률 통계 부족 등을 이유로 인수기준상 보험가입 거절직군을 매우 광범위하게 설정·운영하여, 많은 직업군이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사례 등도 존재함

고위험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

- 고위험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, 각계 전문가, 보험업계 등의 **의견 수렴**을 거쳐 **시행방안**을 논의할 예정임

- 첫째, 보험회사는 **합리적 사유 없이 특정 직업 종사자의 가입을 거절할 수 없음**
- 보험회사가 **특정 직업을 사유로 보험가입을 거절**하기 위해서는 **인수기준에 직무와 보험사고의 객관적 인과관계 등 합리적 거절근거를 마련**하여야 함
 - * 민병두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한 「보험업법」 개정안을 발의('17.1월)한 바 있음
 - 또한, 비명시적으로 특정 직업군을 거절하는 사례*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**거절직군 현황, 직업별 보험가입 실적을 감독당국에 정기적으로 제출**해야 함
 - * 인수기준상 거절직군은 아니지만 인수 심사 과정에서 전건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행위 등
- 둘째, 보험회사의 청약서에 직무위험 평가를 위한 **객관화된 항목을 신설***하여 보험회사가 **직무위험을 구체적으로 평가, 활용**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임
- * 현재 청약서는 주관식 항목(“취급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”)의 포괄고지 형태인 반면, 객관화된 항목(근무년수, 현장·내근직 여부, 취급장비 등)을 신설하여 고지하도록 변경
- 셋째, 직업별 사고 통계 부족을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직군을 확대 운영하는 사례*를 방지하기 위해, **직업별 사고 통계 집적·관리 방법을 개선**할 계획임
- * A보험회사는 위험률 통계 부족 등을 사유로 인수기준상 보험가입 거절직군을 매우 광범위하게 설정하고, 이들 직업 종사자의 가입을 거절하고 있음
 - 보험회사는 보험개발원에 계약자의 **직업별 사고통계**를 신뢰성 있게 제출하여야 하며, 향후 안정적 통계가 확보되면 **보험회사는 인수기준 설정 시 보험개발원으로부터 통계를 제공받아 활용**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.
- 넷째, 보험회사별 “**위험직군*** **인수 현황**”, “**개략적인 인수기준 정보**”가 생명·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**보험소비자에게 공시**될 예정임
- * 보험개발원 「직업분류 및 상해위험등급표」 기준 상해위험 D·E 등급
 - 보험소비자는 공시 정보를 통해 **상대적으로 보험가입 가능성이 높은 보험회사를 쉽게 파악**하고 **보험계약을 청약**할 수 있음
 - * '17.8월 현재, 5개 생명·손해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 계약에서 특정 직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않고 있음